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가합5274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송연

피 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 담당변호사 전재완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 A, B에 대하여 각 175,324,457원, 원고 C, D에 대하여 각 58,441,485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5,324,457원, 원고 C, D에게 각 58,441,4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G 대 700.3㎡, H 대 694㎡(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지분권자였고, F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지분권자였다.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변동

1) F(3/8 지분), I(3/8 지분), J(1/4 지분)의 공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11. 21. F(650/1356.12 지분), I(678.06/1356.12 지분), J(28.06/1356.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1994. 11. 25. 이 사건 건물 중 J 명의의 28.06/1356.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의 지분은 678.06/1356.12 지분(650/1356.12 지분 + 28.06/1356.12 지분)으로 되었다.

3) I는 1996. 6. 28.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1/8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지분은 1/4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4) K은 2008. 2.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K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678.06/1356.1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원고들은 2010. 1.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K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가 각 3/8 지분씩, 원고 C, D이 각 1/8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B는 각 이 사건 토지 중 3/16 지분($1/2 \text{ 지분} \times 3/8 \text{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54.2725/1356.12 지분($678.06/1356.12 \text{ 지분} \times 3/8 \text{ 지분}$), 원고 C, D은 각 이 사건 토지 중 1/16 지분($1/2 \text{ 지분} \times 1/8 \text{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84.7575/1356.12 지분($678.06/1356.12 \text{ 지분} \times 1/8 \text{ 지분}$)을 취득하였다.

5) 원고 B는 2012. 1. 16.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D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16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분만 339.03/1356.12 지분($254.2725/1356.12 \text{ 지분} + 84.7575/1356.12 \text{ 지분}$)으로 증가되었다. 반면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16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상실하였다.

6) F은 2015. 2. 12. L, M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들은 2018. 11. 8. N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증여

피고는 2016. 2.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F의 관련 소송

1) 원고들은 F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23. F은 원고

A에게 68,383,659원, 원고 B에게 54,229,836원, 원고 C에게 22,794,553원, 원고 D에게 36,948,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0306)을 하였다.

2) 원고들과 F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0. 6. 23. 원고 A, B, C의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F은 원고 D에게 28,308,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999)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과 F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1. 26. 원고들과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다254594,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F의 원고 D에 대한 변제

F은 2020. 12. 4. 원고 D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804,227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0. 1. 29.부터 F이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도한 2015. 2. 12.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

F이 피고에게 2016. 2. 2.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5,324,457원, 원고 C, D에게 각 58,441,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원고 A, B, C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 판결에서 위 원고들의 F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 제출 증거로는 위 원고들이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 D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 판결에서 원고

D의 F에 대한 채권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F이 원고 D에게 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원고 D의 피보전채권도 결국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가액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승패, 소송 진행의 전 과정, 권리관계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정진우, 판사 박예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여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지1 여관(기계실) 219.6㎡

1층 여관(계단실) 52.65㎡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40㎡

3층 여관 190.4㎡

4층 여관 190.4㎡

5층 여관 190.4㎡

6층 여관 168.3㎡

7층 여관 112.2㎡, 끝.